

특허뉴스

"PCT출원 국내단계진입 절차 달라진다"

■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절차를 개선하여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에 서지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시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종전에는 출원인의 부주의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제출 기한을 넘겨 출원이 취하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근 개정된 PCT 조약을 반영하여 국내단계진입 시한을 30개월로 통일하

고, 등록료 부족납부시 보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 금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 절차 개선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출원인·대리인·발명자와 국제출원번호 등 출원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어로 된 PCT 출원의 경우 상기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면 번역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소화 됨

2) PCT 조약의 개정 반영

○ PCT출원에 대하여 번역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시한을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

3) 등록료 보정기회 부여

○ 등록료 납부 기간내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을 부족납부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에 반하는 권리의 상실을 방지

4) 기타

○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기초적인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된 등록료를 출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보정제도와 관련한 규정 중 조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함

○ PCT 출원의 취소결정 및 무효심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PCT출원의 기술내용과 국내단계진입시 제출한 번역문의 기술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공조기계 특허 출원 비약적 증가

▣ 특허청의 분석에 의하면 기계 분야의 10대 다출원 품목에

- 냉장고, 에어컨, 펌프가 5년 연속 포함되고 있어 공조기계가 기계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공조기계분야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 98년은 IMF사태의 여파로 '97년보다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 2000년 이후에는 출원건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공조기계분야 출원 현황

- '98년은 '97년보다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33.2% 감소
- 2001년은 '99년보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건수 331% 증가

* 공조기계분야 10대 다출원 품목 현황

- 10대 다출원 품목은 전체 공조기계분야 출원 중 80% 내지 90% 정도를 차지
- '98년 1위를 차지한 냉장고 관련출원은 '99년 대폭 감소한 후 2000년부터 점차 증가

▣ 또한, 출원업체별로 살펴보면

- 이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기술개발이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공조기계분야의 다출원 품목으로

- 냉장고, 펌프, 공기조화기기가 변갈아 가며 1위 내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기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韓-中 특허 공동 심사 추진

한국과 중국간 특허출원건수가 늘어나면서 양국간 '특허협력'이 강화된다.

김광립(金光琳) 특허청장과 중국 왕징환(王景川) 지식산권

국(知識產權局) 청장은 9일 제주에서 '8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심사에서 '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에 공동 출원된 발명 특허 등의 심사에서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권리리를 설정하기 위해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

특허뉴스

양국은 또 특허 출원인인
의 권리를 인정하는 '우선권 증
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교
환,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

게 줄이기로 했다.
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92년 195건에
서 2000년 2140건으로 증가했으

며 국가별 출원건수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출처 동아일보

일본, 특허료 안내 중국제품미수출 봉쇄나서

소니가 특허료를 내지 않고 생산된 중국산 DVD플레이어를 미국에서 판매해온 미국 기업 에이펙스에 대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소니는 그동안 히타치(日立). 마쓰시타(松下). 도시바(東芝). 미쓰비시(三菱)전기 등과 함께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DVD 특허계약에 대한 공동협상을 벌여 왔는데, 중국측이 특허료 지급을 미루자 단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소니는 중국 DVD 메이커들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일단 판매를 봉쇄한 상태에서 특허교섭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VD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니가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 가전업체들 사이의 특허분쟁이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들은 또 중국업체들이 이 CD에 대한 특허도 침해하고 있다며 DVD에 이어 별도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5대 전자업체와 미국의 타임워너 등 6개사는 공동의 특허교섭 창구를 두고, 1999년부터 중국의 1백여개 DVD 플레이어 제조업체들과 접촉해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 업체에 대해서는 찐 특허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특허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미.일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면서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가격하락을 부채질함으로써 특허료 손실과 함께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에이펙스는 중국계로 추정되는 미국의 대형 DVD 유통회사로, 중국산 DVD 플레이어를 대량으로 수입, 미국내 양판점에서 대당 1백달러 미만으로 팔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특허기술 절반이상 낮음... 작년 37%만 활용

국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 중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휴면(休眠) 특허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특허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기술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술특허 실용신안 등의 특허기술의 활용도는 97년 18.2%, 98년 36.6%, 99년 43.8%, 2001년 37.3%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의장 등을 포함한 산업체·산권 전체로도 97년 24.0%, 98년 46.8%, 99년 48.5% 등이었다.

‘휴면 권리’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기업체·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까지 포함하면 활용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특허청은 추산하

고 있다.

특허권 활용 비율은 미국의 6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국가적인 자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

대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 벤처기업에 중개하기 위해 2000년 초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됐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또 한국발명전흥회가 무료로 거래를 알선하는 ‘특허장터’를 통해서도 2000년 30건, 2001년 81건만이 거래됐다.

2001년 현재 등록돼 있는 특허기술, 실용신안은 42만1551건으로 이 가운데 37% 가량인 15만5900여건만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 오강현(吳剛鉉) 사장은 “2001년 특허기술 등록 유지비로 받은 약 700억원중 440억원은 활용되지 않은 특허기술의 ‘보관료’라며 휴면 기술의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수백개의 특허기술을 등록하고 있는 LG화학·LG전자·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미활용 미실시되고 있는 특허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특허권 기부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특허청에 전의했다.

개발한 기업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가 없는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줄 수 있도록 △정부·지정·비영리 기관에 맡겨 수요자를 찾아주도록 하고 △맡겨진 특허권에 대해서는 기술의 가치 만큼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오 사장은 “미국의 ‘내국세 규약’은 국가와 주정부 등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센터에 특허권을 맡겨 기부하면 특허권의 시장가치를 평가한 후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특허권 기부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日법원, 인터넷 게시판 투고문 저작권 인정

일본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투고한 발언 내용을 무단으로 출

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투고자 11명이 출판사 등을

특허뉴스

상대로 260만엔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투고된 글이라도 “어느 정도의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 출판물 판매중지 및 폐기와 함께 110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에서 인터넷 게시판 발언

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익명 투고를 모아 한 출판사가 ‘세계 최고의 호텔술(術)’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무단 출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책은 1만부 넘게 팔렸다.

이번 판결은 게시판의 익명 투고라 할지라도 출판물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안이하게 인용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를 인용하거나 책으로 펴낼 경우 등에는 투고자의 허락이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연합뉴스

도메인 네임 상표 출원 금지수, 악용 우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 및 서비스표로 출원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향후 인기 도메인 네임의 악용이 염려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kr)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총 46만5323개에 달하나 이 중 0.17%인 811개만이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표로 출원되지 않은 유명 도메인 네임의 인기를 이용, 제3자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고 사업을 통해 이익을 올리더라도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이를 제재할 법적 권리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사업자가 선점한 상표권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르거나 하자가 많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도메인 네임의 이미지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도메인 네임의 역사가 짧아 상표권자에 의해 악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난 99년 10월

부터 시작된 40여건의 도메인 네임과 상표간 분쟁에서는 대부분 상표권자가 승소했다.

특허청 상표1과 전현종 사무관은 “도메인 네임은 본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일 뿐이라 상표권 분쟁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며 “권리 분쟁과 이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 등록과 병행해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북, 北京 특허상표 대표부 개설

외국기업의 북한내 국제특허, 상표, 의장 등의 업무를 전담 대행하는 조선△베이징(北京)특허상표 대표부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 개설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선△베이징특허상표 대표부는 외국기업의 북한내 모든 국제특허, 상표, 의장, 원산지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신규로 허용된 의약품과 식품의 특허업무도 취급한다.

중국의 동강과기 자문회사 (patent@dprk-link.com)가 지

난해 11월 북한당국으로부터 특허대행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개설한 이 대표부는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 과학참사부와 연계돼 있다.

대표부는 김금철 대표를 비롯 8명의 분야별 책임자로 구성돼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등록 범위는 기계설비와 장치, 기술공정, 기술공학적 생산 방법 등이며, 순수 과학적 이론과 건설, 시설물 설계도면, 언어문법, 각종 계산 도표 및 부호, 기업관리 체계 등을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권을 받으려는 해외 법인과 개인은 ‘조선말’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로 제출할 경우 3개월 이내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조선△베이징특허상표 대표부는 신청서를 접수해 기초심사를 거친 뒤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북한 과학원발명국으로 보내게 된다. 이 대표부는 앞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 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 한국 한단계 하향 조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대 표 최현규·이하 SPC)는 미국무 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례재심 결과, 우리나라가 기존 ‘우선감시대 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SPC는 이번 결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 신용도가 한 등급 올라감에 따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투자가 한 충격을 것이며, 그동안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 측에 제기했던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압력이 줄 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래 불법복제율이 20% 가까이 떨어진 점, 지난해초 한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실시한 강도높

은 불법복제SW 단속, 저작권 침 해를 막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위해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설치한 점 등이 이번 심사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PC는 앞서 지난달초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국내 SW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미 USTR과 상무부·국무부·특허청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알린 바 있다.

USTR은 매년 각 국가별 지적 재산권 침해도를 조사해 ‘우선협 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 3등급으로 나눠 국제통상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